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안내서

2024. 6.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 편의제공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2
□ 별도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2
□ 별도 답안지를 신청한 경우	3
□ 대필을 신청한 경우	4
□ 대독을 신청한 경우	4
□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한 경우	5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5
□ 수화통역사 배치를 신청한 경우	6
□ 임부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의 경우	6
□ 질병 등으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경우	6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7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9

편의제공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응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4.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신청 기한 :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 20일 전까지,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중 해당 서류 택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의사 진단서 사본 1부.(임산부의 경우 의사진단서를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 의사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 구분 및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제공의 내용과 범위는 7페이지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편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시험시간을 기존 시험시간의 1.5배 연장하여 실시합니다.
- ▶ 다만,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표는 시험관리부 편의제공 담당자가 공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별도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 ▶ 별도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글자 확대(118%, 200%, 350%) 또는 축소(82%)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기본 문제지 글자는 맑은 고딕 11포인트이며, 요양보호사 직종만 맑은고딕 13포인트로 인쇄됩니다.

3 별도 답안지를 신청한 경우

- ▶ 별도 답안지를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별도 답안지는 A3 용지에 프린트된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며 서식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답안카드에 마킹이 아닌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을 표기합니다.
- ▶ 숫자는 반드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1, 2, 3, 4, 5)
- ▶ 정답 수정 시 응시자는 잘못 쓴 정답 숫자에 두 줄을 긋고 본인 이름을 정자 서명한 후 옆에 정답 숫자를 기재합니다.
- ▶ 중복 표기(뭇 쓰기, 2개 답안 표기 등)된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2000년도 제0회 [직종] 국가시험 [홀수/짝수]형 확대 답안지					
교시	응시번호	성명	감독관 서명		
※ 답안지 표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정답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를 기재함. ☞ 숫자는 정자로 기재하여야 함.(1, 2, 3, 4, 5) ☞ 정답 수정 시 응시자는 잘못 쓴 정답 숫자에 두 줄을 긋고 본인 이름을 정자 서명한 후 옆에 정답 숫자를 기재함. * 중복표기(뭇쓰기, 2개 답안표기 등)된 문항은 0점 처리됨.					
문제 번호	정답	문제 번호	정답	문제 번호	정답
1		16		31	
2		17		32	
3		18		33	
4		19		34	
5		20		35	
6		21		36	
7		22		37	
8		23		38	
9		24		39	
10		25		40	
11		26		41	
12		27		42	
13		28		43	
14		29		44	
15		30		45	

확대답안지 견본

A3 : 297 × 420 mm

4 대필을 신청한 경우

- ▶ 대필을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감독관이 직접 답안을 답안카드에 마킹해주는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 ▶ 감독관은 대필이 종료된 이후,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대필 결과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단,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대필을 요청한 경우 감독관 2인이 교차 확인하고, 대필결과를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확인 받습니다.
- ▶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대필 결과 이상 없는 경우, 감독관 및 편의제공 대상자는 답안카드 이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응시자는 감독관과 대필 방법에 대해 시험 시작 전에 협의합니다.

예시1) 응시자가 문제지에 직접 정답을 작성하고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카드에 이기

예시2) 응시자가 시험 시간 중 정답을 말하면 감독관이 즉시 답안카드에 마킹

예시3) 감독관이 문제지에 정답을 대필하고 시험 종료 후 마킹

5 대독을 신청한 경우

- ▶ 대독을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감독관이 직접 응시자 안내사항과 문제를 읽어주는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 ▶ 시험문제 대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 ▶ 사진, 그림, 도표 등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대체하여 출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로 교체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6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한 경우

- ▶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응시자 안내사항과 문제 파일을 센스리더 프로그램이 읽어주는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 ▶ 응시자는 문제 파일에 답안을 기재하며,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 기재된 답안을 보고 답안카드에 대필합니다.
- ▶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사진, 그림, 도표 등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대체하여 출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로 교체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7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경우, 응시자는 응시자 안내사항과 문제가 점자로 찍힌 문제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 ▶ 응시자는 점필로 답안을 기재하며, 시험 종료 후 기재된 답안을 감독관에게 불러주고 감독관은 이를 듣고 답안카드에 대필합니다.
- ▶ 감독관은 대필이 종료된 이후,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대필 결과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단,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대필을 요청한 경우 감독관 2인이 교차 확인하고, 대필결과를 편의제공 대상자에게 확인 받습니다.
- ▶ 답안카드 대필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수화통역사 배치를 신청한 경우

- ▶ 청각장애인 응시자가 수화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자는 수화통역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수화 통역의 범위는 시험 진행 방송 및 감독관 지시 사항에 한정됩니다.

9 임부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의 경우

- ▶ 임부 혹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응시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경우,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 시, 응시자는 소지품을 모두 교실에 두고 퇴실 하며, 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합니다. 또한 필요 시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칸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질병 등으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경우

- ▶ 질병 등으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요청할 경우, 편의제공 대상자로 심사된 자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경우,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 시, 응시자는 소지품을 모두 교실에 두고 퇴실 하며, 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합니다. 또한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칸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필기시험								비고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 /음성지원 컴퓨터	별도 문제지 ¹⁾	별도 답안지 ²⁾	별도 시험실	대필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도우미 ³⁾	
지체 장애 (상지)	심한 (기존 1~3급)	1.5배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지체장애 (하지)		-	-	-	-	가능	-	-	가능	
뇌병변 장애		1.5배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시각 장애	심한 (기존 1~3급)	1.5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택1)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불가 ⁴⁾	-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청각 장애	심한 (기존 1~3급)	1.5배	-	-	-	가능	-	가능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수화통역사 ⁵⁾ 배치 (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심하지 않은 (기존 4~6급)	-	-	-	-	가능	-	가능	-	
언어, 신장, 심장 장애		-	-	-	-	가능	-	-	-	
뇌전증 장애		-	-	-	-	가능	-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 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지적장애		1.5배	-	-	-	가능	-	-	가능	
장루·요루 장애		-	-	-	-	가능	-	-	-	- 시험 중 배변·배뇨 보조기구 교체 지원
임부·산부		-	-	-	-	가능	-	-	-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기타 ⁶⁾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	-	-	-	가능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일시적 신체장애	-	-	-	-	-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 1) 글자 확대(118%, 200%, 350%), 축소(82%), 점자 중에서 선택
(단, 필기시험(컴퓨터시험)은 프로그램에서 글자크기 조정 가능(80%~120%)하나, 200% 및 350% 글자확대를 선택할 경우 별도 모니터 제공)
 - 2)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일반 용지 사용,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 표기)
 - 3) 도우미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4)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시간 연장(1.5배) 허용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5)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6)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사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질병 등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지정된 화장실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구분	수기형 실기시험							비고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¹⁾	별도 답안지 ¹⁾	별도 시험일 ²⁾	대독	대필	도우미 ³⁾	
지체장애	1.5배	-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뇌병변장애	1.5배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시각장애	1.5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 확대문제지와 대독 중 택일 -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청각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수화통역사 ⁴⁾ 배치 (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언어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지적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뇌전증장애	-	-	-	가능	-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기타 ⁵⁾								- 심사 후 결정

1)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

2) 2일 이상 시행되는 시험에 한함

3) 장애로 인해 제한 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도우미를 허가하되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4)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5)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또는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시험 직종		시험구분	<input type="checkbox"/> 필기시험 <input type="checkbox"/> 수기형 실기시험 ※ 해당 시험구분(필기/실기)별로 각각 신청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호자는 필요시 기재)	응시자 : 보호자 :
주 소	□□□□□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상세기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20px; width: 100%; margin-top: 5px;"></div>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카드 <input type="checkbox"/> 의사 진단서(임산부에 한하여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위 서류(사본) 중 한 가지 제출		
편의 제공 요청 사항	시험시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연장	
	문 제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문제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350% <input type="checkbox"/> 82%)	
	답 안 지 (택1)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답안지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350%) <input type="checkbox"/> 대필	
	점자 / 대독 / 음성지원컴퓨터 (택1)	<input type="checkbox"/> 점자 문제지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컴퓨터 <input type="checkbox"/> 대독	
	시 험 일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시험일 변경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일 ※ 의사·치과의사(과정평가)·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실기시험에 한함.	
	시 험 실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시험실	
	장애인 보조기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조기구 명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기구 사용 시 필요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필요사항 :)	
	기 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도우미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사 <input type="checkbox"/>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신청서 기재 시 <뒷면>의 '필기시험', '수기형 실기시험'별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귀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기준

편의제공 대상자로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4.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제출서류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의사 진단서 사본 1부.(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등 기술)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진단서 사본 1부.
 -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 1부
 - * 임신부의 경우 의사진단서를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

구분	필기시험									비고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 문제지 ¹⁾	별도 답안지 ²⁾	별도 시험실	대필	장애인 보조기구 지침	도우미 ³⁾		
지체장애(상지)	심한(기준 1~3급)	1.5배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심하지 않은(기준 4~6급)	-	-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지체장애(하지)	-	-	-	-	가능	-	-	-	가능	
뇌병변장애	1.5배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시각장애	심한(기준 1~3급)	1.5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점자 / 대독 / 음성지원컴퓨터 택1
	심하지 않은(기준 4~6급)	불가 ⁴⁾	-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청각장애	심한(기준 1~3급)	1.5배	-	-	-	가능	-	가능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수화통역사 ⁵⁾ 배치 (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심하지 않은(기준 4~6급)	-	-	-	-	가능	-	가능	-	
언어, 신장, 심장 장애	-	-	-	-	가능	-	-	-	-	
뇌전증 장애	-	-	-	-	가능	-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지적장애	1.5배	-	-	-	가능	-	-	-	가능	
장루·요루 장애	-	-	-	-	가능	-	-	-	-	·시험 중 배변·배뇨 보조기구 교체 지원
임부·산부	-	-	-	-	가능	-	-	-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기타 ⁶⁾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	-	-	-	가능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일시적 신체장애	-	-	-	-	-	-	-	-	- 서류(의사진단서) 심사 후 결정

- 1) 글자 확대(118%, 200%, 350%), 축소(82%), 점자 중에서 선택
(단, 필기시험(컴퓨터시험)은 프로그램에서 글자크기 조정 가능(80%~120%)하나, 200% 및 350% 글자확대를 선택할 경우 별도 모니터 제공)
- 2)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일반 용지 사용,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 표기)
- 3) 도우미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4)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시간 연장(1.5배) 허용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5)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6)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사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질병 등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지정된 화장실 사용,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구분	수기형 실기시험							비고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¹⁾	별도답안지 ¹⁾	별도시험일 ²⁾	대독	대필	도우미 ³⁾	
지체장애	1.5배	-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뇌병변장애	1.5배	가능	가능	가능	-	가능	가능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시각장애	1.5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확대문제지와 대독 중 택일 별도답안지와 대필 중 택일
청각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수화통역사 ⁴⁾ 배치(응시요령을 수화로 안내함)
언어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지적장애	1.5배	-	-	가능	-	-	가능	
뇌전증장애	-	-	-	가능	-	-	-	발작이 있는 경우 발작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기타 ⁵⁾	-	-	-	-	-	-	-	심사 후 결정

- 1) 글자 확대(118%, 200%, 350%) 중에서 선택
- 2) 2일 이상 시행되는 시험에 한함
- 3) 도우미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4) 수화통역사는 국시원에서 지정한 자로 배치함
- 5)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또는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